

<붙임> [게시용]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

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『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 비철금속류』가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(‘24.7.1.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)됩니다.

이에 따라,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(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)를 취급하는 사업자(매출자, 매입자 모두 해당)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“스크랩등 거래계좌”를 개설하여야 하며,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 시 반드시 “스크랩등거래계좌”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리·철스크랩·비철금속류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, 이미 구리·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·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

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Ⅰ

▶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?

사업자간 법정품목*을 거래하는 경우,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,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, 제106조의9)

* 법정품목: 금지금(‘08년), 고금(‘09년), 구리스크랩(‘14년), 금스크랩(‘15년), 철스크랩(‘16년), **비철금속류**(‘24.7.1.이후)

▶ 개정내용 : 비철금속류* 적용대상 품목 확대(‘24.7.1.이후 공급·수입하는 분부터 적용)

*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) 구리, 알루미늄 아연, 납, 니켈 등

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(☎ 044-204-3229)

■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)

※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? 사업자간 법정품목*을 거래하는 경우,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,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, 제106조의9)
 * 법정품목 : 금지금, 고금, 금스크랩, 구리스크랩, 철스크랩, **비철금속류**(‘24.7.1.이후 공급·수입하는 분부터 적용)

- (적용대상) 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를 거래하거나, 사업자가 비철금속류를 수입하는 경우
- (계좌개설) 비철금속류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
- (대금지급) 사업자가 비철금속류를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,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
- *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(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)
- (가산세 등)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,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

■ 스크랩등거래계좌 가입대상 : 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(간이 포함) 및 법인

■ 지정은행(13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

■ 스크랩등거래계좌(이하. "전용계좌"라 함)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

구 분	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
공통 준비서류 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	• 사업자등록증·통장 사용인감·대표자 실명확인증표
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	• 법인인감증명서·법인인감·법인등기부등본(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)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[법인]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 [개인사업자] 위임장, 개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일부 은행 기업인터넷(폰)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(계좌개설만 가능), '가입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

- ☞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
 *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
- ☞ 전용계좌를 통한 **비철금속류 대금지급**은 **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** 가능함
 다만,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
 * 일부 은행은 사정에 따라 비철금속 확대 시행일('24.7.1) 이전에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
- ☞ 구리·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·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(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)

■ 문의 안내

- ☞ 국세상담센터 126(2-2), 세무서(부가가치세과, 법인세과), 지방국세청(부가가치세과), 국세청
- ☞ 제도 안내: 홈택스>홈택스 이용 갈잡이>홈택스 이용 세무서식 안내>주요 제도 소개>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
- ☞ 고객센터 : 경남은행(1600-8585), 광주은행(1600-4000), 국민은행(1588-9999), 농협은행(1588-2100), 대구은행(1588-5050), 부산은행(1544-6200), 수협은행(1588-1515), 신한은행(02-2007-9470), 우리은행(1588-5000), 전북은행(1588-4477), 기업은행(1566-2566), 하나은행(1599-1111), 한국산업은행(1588-1500)